인쇄하기

영업점

무방문,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

수신금리연동부 예·부적금담보대출



가입대상 **개인사업자&법인**



^{최장} **관려상품 만기일내**

상품안내

상품특징

- 본인 명의 예 · 부적금을 담보로 수신금리에 연동하여 대출하는 상품

대출신청자격

- 본인 명의 예 부적금(계약해지 의제계좌에 편입된 적립식예금 제외)을 담보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 제외.
- 1. 담보로 하는 예 부적금이 신규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만기 재예치 예금
- 나.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또는 평형변경에 따른 주택청약예금
- 2. 담보로 하는 예 부적금의 신규시 적용 수신금리가 신규 당일의 일반 공시금리(기본금리) 미만인 경우
-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이 정한 여신 부적격자인 경우 취급 이 제한될 수 있음.

대출금액

- 담보 예·부적금 납입액의 95%이내(천원단위 취급)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관련 예 · 부적금의 만기일이내에서 운용하되, 복수예금의 경우 관련 예 · 부적금 중 만기일이 가장 짧은 날 이내 로 함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관련 예 · 부적금의 만기일이내에서 운용하되, 복수예금의 경우 관련 예 · 부적금 중 만기일이 가장 짧은 날 이내로 함

금리 및 이율

적용이율 결정방법

- 여신건별 취급금액 5억원 이하 : 예 · 부적금(신탁수익권 포함)금리 + 1.25%p
- 여신건별 취급금액 5억원 초과 : 예 · 부적금(신탁수익권 포함)금리 + 1.0%p
- 대출금리예시(중소법인, 고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 계약기간 1년 국민수퍼정기예금 담보, 대출금액 1억원,

2024.11.04기준)

이 예금금리 : 연 2.50%이 가산금리 : 연 1.25%p이 적용금리 : 연 3.75%

*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

이자계산 방법

-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(윤년인 경우 366)로,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

원리금상환 방법

-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, 이자는 대출만기일 일시 후취하거나 매월 예금이자 지급상당일에 후취

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

- 해당 사항 없음

수수료 등 부대비용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※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: 비과세

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 대출금액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 (고객부담 7만5천원)

대출금액 10억원 초과 : 35만원 (고객부담 17만5천원)

- 담보취득비용

○ [근저당권] 설정등기 하는 경우(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)는 은행 부담 / 감액 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/ 국민주택채권매입비(설정금액의 10/1,000)는 고객 부담

ㅇ [담보신탁]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/ 담보신탁

처분시 고객 부담

- 보증료 :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

이자 부과시기

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.[예시) 매월 (00)일에 지급합니다]

이용안내

유의사항 및 기타

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

- 관련 예 · 부적금의 만기일이내에서 기한연장 가능

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담보 예 · 부적금의 만기일이 되었거나 월부금 납입이 중지된 경우에는 담보 예 · 부적금과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 제충당의 방법으로 회수 처리함

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

- 관련 예 · 부적금 담보 취득

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

- 해당사항 없음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- 개시일 : 2024.11.04 - 종료일 : 2026.10.31

대출실행시 부가 혜택

-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,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KB스타클럽제도 등에 선정되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음

기타 계약사항

-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,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,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.

※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.

판매종료여부

- 판매중

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- *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 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.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근저당권 말소비용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: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(회사채 등급상승, 재무상태 개선, 특허권 신규취득,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제공 등)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청약의 철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의 해지 :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\cdot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\cdot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,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, 금리, 담보 등 기타 자

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☎ 1588-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.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차 이자계산 방법 변경(변경 적용일 : 2013. 7.1)

가. 변경전후의 거래조건의 비교

(변경전)

-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(윤년 여부에 불구)로 나누어 계산

(변경후)

-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(윤년인 경우 366)로,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

나.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3차 수수료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(변경적용일 :2018.12.07)

가,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

(변경전)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(변경후)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(추가) ※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: 비과세

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 대출금액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 (고객부담 7만5천원)

대출금액 10억원 초과 : 35만원 (고객부담 17만5천원)

- 담보취득비용

○ [근저당권] 설정등기 하는 경우(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)는 은행 부담 / 감액 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/ 국민주택채권매입비(설정금액의 10/1,000)는 고객 부담

ㅇ [담보신탁]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/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

- 보증료 :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

나.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: 여

준법감시인 심의필

-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4966-7호(2024.11.04)

(유효기간: 2024.11.04~2026.10.31)